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
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조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9911호, 2024. 1. 2. 공포, 2025. 1. 3. 시행)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권한에 대한 소속기관 위임과 질병, 부상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치료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설치 권한의 위임(안 제2조)

해양경찰청장은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지역에서 각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

나. 치료의 기준과 절차(안 제3조)

해양재난구조대원의 질병, 부상에 대한 치료 기준 및 절차는 수상에서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0조의 2를 준용하도록 함

다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(안 제4조)

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권한의 위임) ① 해양경찰청장은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해양경찰서장에게 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에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.

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경우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(치료의 기준과 절차 등)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치료의 기준과 절차는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준용한다.

제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

3.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

4.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가목, 제7조제2항제2호,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 중 “민간해양구조대원”을 각각 “해양재난구조대원”으로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	
연 락 처	(032) 835 - 2246